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42
----------	------

발의연월일 : 2024. 11. 18

발 의 자 : 박성훈 · 김성원 · 이현승
김기현 · 이인선 · 고동진
이달희 · 임이자 · 김위상
이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 ----- ----- ----- -----.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u>제5조의 규정</u>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1. ----- ----- -----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